

# 「인천청라 시티프라디움」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I

###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대로 131
- 공급규모 : 아파트(270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입주예정시기 : 2022년 03월 예정
- 공급대상(예정)

주택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시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m <sup>2</sup> )					공급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민영 주택	84.9904A	84A	84.9940	22.2140	107.2080	55.9852	163.1932	112
	84.9995B	84B	84.9995	23.5117	108.5112	55.9889	164.5001	79
	84.9940C	84C	84.9940	22.8126	107.8066	55.9852	163.7918	79
	공급세대 합계							270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m<sup>2</sup>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단위 : 세대)

구분	84A		84B		84C		소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국가유공자	1	5	1	5	1	5	3	15	
장애인	서울특별시	2	10	1	5	1	5	4	20
	인천광역시	2	10	1	5	1	5	4	20
	경기도	2	10	1	5	1	5	4	20
장기복무 제대군인	1	5	1	5	1	5	3	15	
10년이상 복무군인	1	5	1	5	1	5	3	15	
북한이탈주민	1	5	1	5	1	5	3	15	
중소기업 근로자	1	5	1	5	1	5	3	15	
합 계	11	55	8	40	8	40	27	135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m<sup>2</sup>) x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에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2021.07.23. 사용승인을 받은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 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 특별공급 일정계획(예정)

구 분	일 정	비 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 12. 17(금)	일간신문 당사 홈페이지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 (추후 공개 예정)
• 견본주택 개관일	2021. 12. 17(금)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대로 131 시티프라디움 분양사무실 (사이버모델하우스 공개 예정)
•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1. 12. 27(월)	한국감정원 청약home 인터넷청약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2. 01. 04(화)	한국감정원 청약home 인터넷청약 (www.applyhome.co.kr)

- 20.03.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청약(청약home)신청(서류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분양사무실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분양사무실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필요서류 분양사무실 별도 문의)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I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당첨자선정 방법

구분	내용
1회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li> <li>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li> <li>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li> </ul>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구분	내용
----	----

청약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b>-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은 제외)</b></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서울특별시</th> <th style="width: 25%;">인천광역시</th> <th style="width: 25%;">경기도</th> </tr>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able>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 각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별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li> <li>※ 추천기관</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60%;">관련법규</th> <th style="width: 25%;">해당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장애인</td> <td>「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td> <td>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td> </tr> <tr> <td>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추천</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td> <td>인천지방 보훈지청 복지과</td> </tr> <tr> <td>장기복무 제대군인</td> <td>「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td> <td>인천지방 보훈지청 복지과</td> </tr> <tr> <td>중소기업근로자</td> <td>「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 <td>인천지방 중소기업청 조저협력과 성장지원팀</td> </tr> <tr> <td>북한이탈주민</td> <td>「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td> <td>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기획과</td> </tr> <tr> <td>장기복무군인</td> <td>「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 <td>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 </tr> </tbody> </table>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추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	인천지방 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인천지방 보훈지청 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조저협력과 성장지원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기획과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추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	인천지방 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인천지방 보훈지청 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조저협력과 성장지원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기획과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b>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특별공급 신청하여야 합니다.</b></li> <li><b>[신청시 주택형 변경 불가,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b></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li> </ul>
-----------------	--

	<p>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	---

**■ 입주자 선정에 관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양사무실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분양사무실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 III

## 분양사무실 위치 및 분양문의

- 분양사무실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대로 131 시티프라디움 근린생활시설1  
(사이버 모델하우스 공개 예정)
- 분양홈페이지 : [www.인천청라시티프라디움.com](http://www.인천청라시티프라디움.com)
- 분양문의 : ☎ 1544-4388



※ 해당기관에서는 해당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명단을 2021.12.22.(수) 정오 12시(예정)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